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법체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비함 (안 제3조)

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방안 반영 정비

-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 위임없이 구 조례에서 임의 규정한 심의사항 조문을 삭제 (안 제2조제4호)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임의 규정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은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구 조례로 규정한 조문 삭제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22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6.4.6. ~ 2016.4.26.(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정한”을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2. 서대문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3.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5. 서울서대문경찰서장
6. 서울지방보훈청장
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9. 서대문소방서장
10.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장
11. 서대문보건소장
12. 서대문세무서장
13. 서대문우체국장

14. KT서대문법인지사장

15.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사장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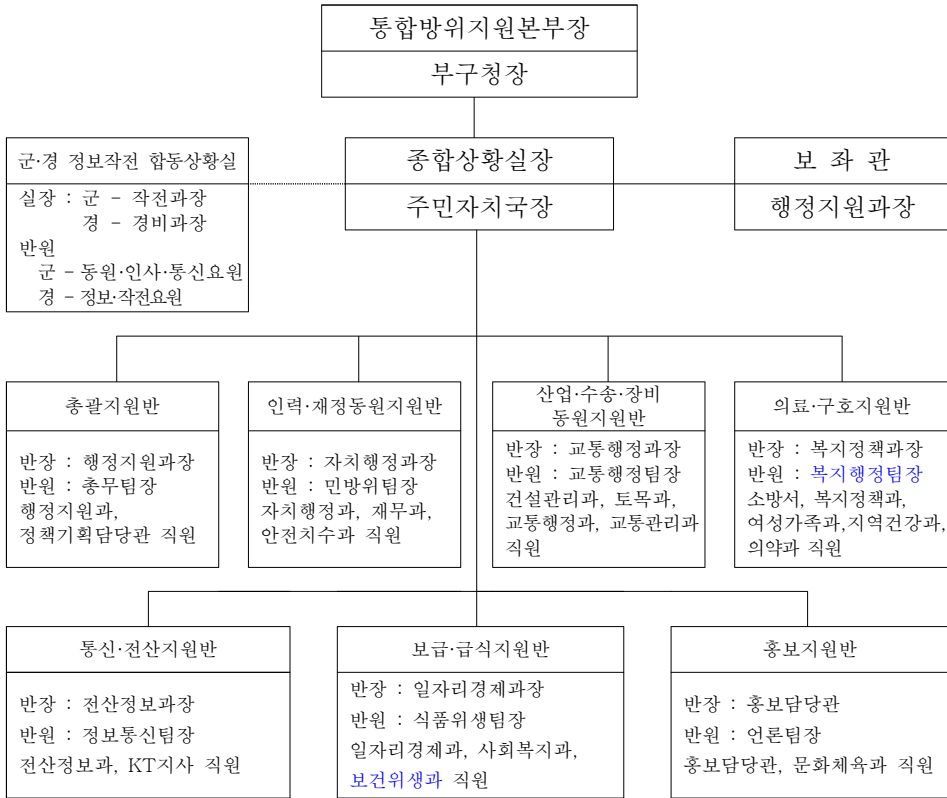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 구조문대비표

서대문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1. 구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장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 서대문경찰서장 4. 제1905부대장 및 3대대장 5.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6. 국가정보원지역담당관 7. 지역기무부대장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1.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2. 서대문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3.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5. 서울서대문경찰서장 6. 서울지방보훈청장 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

- 8. 서대문세무서장
- 9. 서대문소방서장
- 10. 서대문우체국장
- 11. 서대문보건소장
- 12. KT신촌법인지사장

- 13.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점장
- 14. 서대문구재향군인회장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④ (생 략)

육장

-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 9. 서대문소방서장
- 10.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장
- 11. 서대문보건소장
- 12. 서대문세무서장
- 13. 서대문우체국장
- 14. KT서대문법인지사장
- 15.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사장

-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 3. (생 략)
- ② (생 략)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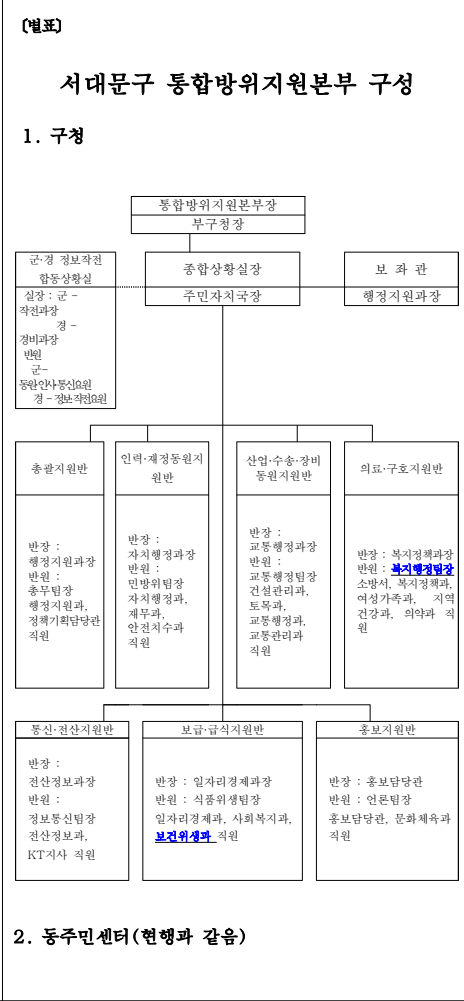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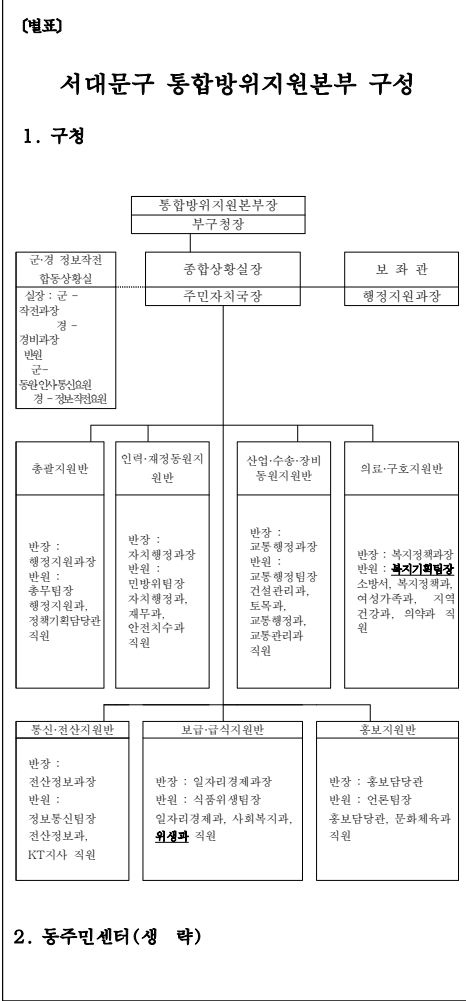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둔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 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산발생 사유 없음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8급 김영준(330-1063)

□ 통합방위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7조에서 이동 <2009.5.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64호, 2015.1.6, 일부개정]

제8조(지역협의회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

[제7조에서 이동, 중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